

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창수 위원장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와 승인이 이뤄지도록 하며, 잘못된 약어를 바르게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첫째, 제2조제2호 중 “시의회 의원”을 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(이하 ‘시의원’이라 한다)”로 변경하는 것입니다.

둘째, 제2호제2항을 삭제하고,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는 것입니다.

마지막으로 제4조제2항 중 “시의회의원”을 “시의원”으로 하고, “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”를 “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”로 변경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-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참여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심사와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 되었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